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가단23945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상기, 하재민

피 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박명순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433,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8,228,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거래 관계

원고는 2014. 6. 2.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및 D 주식회사로, 보험기간을 2014. 6. 4.부터 2015. 6. 4.까지로, 보험사고를 우연한 오염, 악의적 생산물 변경, 생산물 강탈로, 보상한도액을 사고 당 미화 2,500,000달러로, 자기부담금을 사고 당 미화 150,000달러로, 피보험자 손해분담률을 사고 당 10%로 하는 내용의 오염생산물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는 양계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가공·판매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2. 1. 1. C와 사이에 살균제품과 비살균제품, 계란분말 등 계란가공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C에 계란가공품을 납품해 왔고, C는 위 계란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E, F, G 등의 과자를 제조판매하였다.

한편 피고는 C의 관계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도 2009. 12. 1. 계란가공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계란가공품을 납품해 왔고, H은 피고가 납품한 계란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I, J, K, L, M 등의 과자를 제조하여 C에 납품하였으며, C가 위 과자류를 판매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의 임직원들은 피고의 계란가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할란실에서 계란을 깨 전란액을 얻고, 난각을 난각실로 보내어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난각과 난각 내부에 있던 잔여 전란액으로 분리한 다음, 위 잔여 전란액은 바닥으로 흘러 배수구를 통해 폐수처리시설로 배출하고, 난각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바깥의 폐기물 저장소로 운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잔여 전란액을

폐수처리시설로 보내지 않고 할란실 내 전란액과 혼합하여 살균전란액과 전란분말을 제조하였다(이와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 살균전란액과 전란분말을 ‘잔여물 혼합 제품’이라고 통칭한다).

N언론은 2015. 2. 13. 저녁 9시 뉴스에서 잔여물 혼합 제품에 관하여 “O”이라는 보도하였는데, 그 요지는, ‘피고가 운영하는 계란가공공장에서 할란(割卵, 계란을 깸) 공정 후 나오는 계란 껍데기를 난각처리기(원심분리기)에 넣어 껍데기와 액체를 분리한 후 이 찌꺼기 액체를 정상 액란과 섞어 다시 사용하고, 폐기물로 버려야 하는 계란을 재사용할 뿐만 아니라, 파란(破卵, 깨진 계란), 이물질이 묻은 계란이 난각처리기에 들어가 함께 가공된다’는 것이었다. 이후 다른 언론사들도 잇따라 ‘쓰레기 계란’, ‘찌꺼기 계란’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관련 보도를 계속하였고, 이는 이른바 ‘폐기물 계란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기도는 2015. 2. 15. 피고에 대하여 파쇄난각 추출 액란을 사용한 생식품 전체 판매금지 및 상기 원료로 생산된 전체 제품 회수 및 폐기를 지시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 2. 16. C 및 H에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전란액 및 전란분에 대해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사용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C와 H은 공장, 시판창고, 유통창고, 시판차량 및 영업소, 유통거래처, 군납대리점에서 보유하고 있던 미판매 제품과 시판거래처인 소매점에 판매된 제품, 소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 중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전란액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들을 모두 회수하여 폐기하였다.

피고 임직원들은『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2012. 12.경부터 2013. 4.경까지,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① 난각분쇄기에서 추출한 계란액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 계란과 섞어 살균전란액과 전란분말을 제조함으로써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가공하였고, ② 납품하였다가 반품된 제품 일부를 정상 계란액과 섞어 재사용하였음에도 새로 살균하여 포장한 날짜를 제조일자로, 그로부터 5일을 새로운 유통기한으로 표시함으로써 축산물의 포장에 있어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하였다 』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 관련 보험금사건 및 보험금 공탁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채무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C는 반소로 잔여물 혼합 제품과 이 사건 사고 등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4155(본소), 2015가합578307(반소)], 피고가 원고의 승소를 위하여 위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다(이하 ‘관련 보험금사건’이라 한다).

관련 보험금 사건 제1심 법원은 2019. 2. 13.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E, F, G, L, K, I, J, M 등 8가지 제품 중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잔여물 혼합 제품을 사용한 제품의 비율은 96%인데, 위 제품과 그 원료인 잔여물 혼합 제품은 모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목적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이 보험사고로 정하는 ‘우연한 오염’에 해당한다.

C에게 발생한 보험약관상 손해액(보험약관에 따른 대체비용 즉, 회수된 담보목적물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판매에 부적절하게 되어 유사한 상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로 C는 회수 폐기된 제품가격 1,321,696,636원(= 공장, 시판창고, 유통창고 보관분 693,634,107원 + 시판차량 및 영업소 보관분 346,242,471원 + 시판거래처 보관분 41,638,122원 + 유통거래처 보관분 143,394,577원 + 군납대리점 보관분 70,572,043원 + 부서별 회수분 19,617,456원 + 고객 환불분 6,597,860원), 물류비용 100,646,928원(= 물류운반비 58,221,875원 + 창고임차료 15,788,018원 + 상하역비 6,905,723원 + 지게차 파레트임차료 3,317,235원 + 상하역대행수수료 16,414,077원), 폐기비용 55,450,880원 합계 1,477,794,444원(= 1,321,696,636원 + 100,646,928원 + 55,450,8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위 손해액 중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잔여물 혼합 제품 등을 원료로 한 제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418,682,666원(= 1,477,794,444원 × 9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서 자기부담금 169,350,000원을 공제하고, 다시 피보험자 손해분담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1,124,399,399원[(1,418,682,666원 - 169,350,000원) × 90%]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C에 1,124,399,3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보험금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원고보조참가인)가 항소하였는데, 원고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3. 21. C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년 금 제535호로 관련 보험금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한 판결원리금 1,349,433,306원(= 원금 1,124,399,399원 + 이자 225,033,907원)을 공탁하였다.

위 공탁금 1,349,433,306원(원금 1,124,399,399원) 중 C가 직접 제조한 제품 관련 부분이 1,129,549,383원(원금 941,183,712원)이고, H이 C에 납품한 제품 관련 부분이 219,883,923원(원금 183,215,687원)이다.

라. 관련 손해배상사건

피고는 C를 상대로 납품한 계란가공품 등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C는 반소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90004(본소), 2018가합547373(반소). 이하 ‘관련 손해배상사건’이라 한다], C는 반소 청구원인으로, H으로부터 납품받은 과자류는 제외하고, 자신이 직접 제조판매한 과자 제품으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구하였다.1)

관련 손해배상사건 제1심 법원은 2019. 5. 29. 피고의 본소와 관련하여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으로 436,533,007원을 인정하는 한편, C의 반소와 관련하여, 피고가 2014. 1.부터 2015. 2.경까지 잔여물 혼합 제품 등을 C의 대전공장에만 납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축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잔여물 혼합 제품을 생산하여 C에 납품한 행위 및 이에 관한 언론보도 이후에 C에 잔여물 혼합 제품의 범위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행위는 C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피고가 직접 제조한 E, F, G 등 과자의 회수폐기로 인한 손해, 물류비용, 반품폐기비용 등 손해 1,262,739,250원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결국 C의 손해배상채권을 1,139,165,325원으로 인정하였고, 이를 피고가 본소로 구하는 물품대금채권과 상계 충당하여 반소만 702,632,318원 인용하였다.2)

관련 손해배상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28919(본소), 2019나2028926(반소)]에서, 법원은, 2019. 1. 13.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피고는 C에 1,019,947,23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위 판결에서, 피고의 본소 청구에 관해서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으로 436,533,007원을 인정하는 한편, C의 반소 청구에 관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C가 입은 손해는 관련 보험금 사건에서 보험약관상 인정한 손해액, 즉 대체비용과는 다르다는 전제 하에,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등을 적용하여 C의 손해액을 2,258,905,996원으로 인정하면서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하여 C의 손해배상채권을 2,145,960,696원으로 인정하는 한편, C가 관련 보험금사건을 통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129,549,383원을 변제 충당한 나머지 1,456,480,239원을, 피고가 본소로 구하는 물품대금채권과 상계 충당하여 최종적으로 반소만 1,019,947,232원을 인용하였다.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판결에 관해서는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 7호증, 을제22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공탁한 보험금 관련 구상권 청구 부분

(1) 구상금 채권의 발생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상법 제682조 제1항),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잃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이 지급된 보험금액만큼 감소된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1012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유발한 이 사건 사고 관련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C에게, C가 직접 생산한 과자류와 관련하여 합계 2,145,960,696원의 손해를 입혔고(관련 손해배상사건 항소심 판결), 한편 피고의 불법행위 원인이 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도 해당하여 원고는 관련 보험금사건

판결이 명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인 C 앞으로 보험금으로 합계 1,349,433,306원(원금 1,124,399,399원 + 이자 225,033,907원)을 공탁함으로써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49,433,306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탁한 위 1,349,433,306원 중 219,883,923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닌 H이 제조한 과자류와 관련된 손해액으로 C의 손해배상채권과는 무관한 부분으므로, 원고는 이 부분 채권을 대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는, 피고가 관련 보험금사건에서 원고의 승소를 위해 보조참가 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77조가 정하는 참가적 효력에 따라 관련 보험금사건에서 패소한 금액 전액을 원고에게 구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보험금사건에서 피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77조 제1호, 제76조에 따라 참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비록 C가 관련 손해배상사건에서 자신이 직접 제조한 과자류에 한하여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가 입은 손해는 자신이 직접 제조한 과자 제품에 관한 것뿐 아니라 H으로부터 납품받은 과자 제품에 관한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C가 관련 손해배상사건에서 반소로 자신이 직접 제조한 과자 제품에 관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한 것은, 피고가 C와 H을 상대로 각각 별소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소송기술상 각각 반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C는 자신이 직접 제조한 과자류 뿐 아니라 H으로부터 납품받아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과자류까지 직접 폐기하였다. C가 H으로부터 과자류를 납품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위 과자류를 판매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를 폐기 처분하게 되었다면 이는 C의 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관련 보험금사건에서도 H이 납품한 과자류도 이 사건 보험의 담보목적물로 인정되었다).

이 경우 C는 H에 대한 계약상 손해배상채권과 아울러 피고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중첩적으로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H은 C의 관계회사로서 H이 납품한 과자류를 C 상표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피고도 H이 잔여물 혼합 제품을 원료로 제조한 과자류가 C에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가 H으로부터 납품받은 과자 관련 보험금으로 219,883,923원을 수령함으로써 중첩적 관계인 H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도 그 액수만큼 소멸하였게 되었고, 피고도 H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그 금액만큼 면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관련 보험금사건 판결에서 명한 1,349,433,306원 전액(이자 포함)이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고,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송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부분

원고는, 관련 보험금사건에서 피고를 면책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면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문서등사비용, 감정료, 변제공탁보수 등 합계 78,790,850원 상당의 방어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보험금사건은 원고가 먼저 C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자 C가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가 적극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의 승소를 위해 보조참가를 하였는바, 위 사건에서 원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각자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그 소송의 판결에서 피참가인인 원고와 보조참가인인 피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이 정해지는 점에서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구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취지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49,433,306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공탁일 다음날인 2019. 3.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차영민

1) 이는 뒤에서 보듯이, 피고가 별도로 H에 대해서도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H이 반소로 자신이 제조하여 C에 납품한 과자 제품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9998(본소), 2018가합547380(반소)].

2) 피고와 H 사이의 각주 1) 사건에서도,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물품대금채권 277,008,586원을 인정하는 한편, H의 반소와 관련하여, 같은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H이 C에 납품한 L, K, I, J, M 등 관련 손해로 212,005,195원 등을 인정하였다(을제23호증).